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857

제출년월일 : 2025. 10. 13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○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 조문 및 법제명 현행화

○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용어 정비 및 그 밖의 단순·경미한 사항 등 정정을 위해 일괄개정을 추진하여 적합성 확보

2. 주요내용

가. 법령명 및 관련 자치법규 등 인용조문 현행화
(안 제1조 ~ 안 제2조, 안 제4조, 안 제6조 ~ 안 제10조, 안 제12조)

나. 센터명 및 주소 현행화(안 제3조, 안 제5조)

다.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일괄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
다.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
라.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마. 예산수반사항 : 【붙임 4】

○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바. 사전예고(결과) : 해당 없음

○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

사. 기타 참고사항

1) 현행조례 :【붙임 5】

2) 방침결정문 :【붙임 6】

【붙임 1】

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

제1조(「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 본문 중 “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54조제2항”을 “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제54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제31조 및「지방공무원법」제78조”를 “조례는 「행정절차법」 제52조의2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8조”로 한다.

제3조(「안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안산일자리센터(이하“센터”를 “안산시일자리센터(이하 “센터”로 한다.

제4조(「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“법 제103조의3제1항”을 각각 “법 제103조의4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제103조”를 “제103조의2”로 한다.

제5조(「안산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의 소재지란 중 “동산로 268”을 “화랑로 265”로 한다.

제6조(「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법 시행령 제14조의3”을 “법 시행령 제14조의5”로 한다.

제7조(「안산시 도시공원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「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33조”를 “「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29조”로 한다.

제8조(「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4조제7항”을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4조제8항”으로 한다.

별표 제10호의 점용료란 중 “「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」 제14조제6항”을 “「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」 제12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제9조(「안산시 공인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「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40조”를 “조례는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제40조”로 한다.

제10조(「안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“「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「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1조(「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4호의 진료활동의 실명란 중 “장애자용”을 “장애인용”으로 한다.

제12조(「안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”을 “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고,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에 따른 품질인증 농수산물

마.「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」에 따른 경기도지사 인증 우수식품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부서		의정법무과
입안자	의정법무과장	박 상 숙
	의정협력팀장	윤 인 숙
	담당자 (연 락 처)	김 서 우 (481-2719)

【붙임 2】

신・구조문대비표

제1조(「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용역 결과 공개)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결과물을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안산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내용이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전체를 비공개 하거나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.	제20조(용역 결과 공개) ------- ---------- 「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제54조제2항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
제2조(「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」제31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제78조에 따라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	제1조(목적) -- 조례는 「행정절차법」 제52조의2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8조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

현 행	개 정 안
정의 능률화·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안산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
제3조(「안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명칭) 안산시 일자리센터의 명칭은 안산일자리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로 한다.	제2조(명칭) ---------- ---- 안산시일자리센터(이하 "센터----------.

제4조(「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전문매각기관 모집·선정) ① 안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·선정하여 안산시(이하 "시"라 한다)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 1.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을 경매	제4조(전문매각기관 모집·선정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법 제103조의4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. 1. ---------- --------- 법 제103조의4--- ----------

현 행	개 정 안
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. (생 략) ② ~ ⑤ (생 략) 제15조(매각대금의 배분)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에 대하여 법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,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 ② (생 략)	---------- ---------- 2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제15조(매각대금의 배분) ① ---- ---------- ---------- 제103조의2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
제5조(「안산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[별표 1] **안산시 박물관의 명칭 및 소재지** **(조례 제2조 관련)**	[별표 1] **안산시 박물관의 명칭 및 소재지** **(조례 제2조 관련)**

명 칭	소 재 지	비고
안산산업역사박물관	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68(초지동)	
성호박물관	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131(이동)	
최용신기념관	안산시 상록구 샘골서길 64(본오동)	

명 칭	소 재 지	비고
안산산업역사박물관	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65(초지동)	
성호박물관	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131(이동)	
최용신기념관	안산시 상록구 샘골서길 64(본오동)	

제6조(「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) ①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14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②·③ 삭 제 ④·⑤ (생 략)	제9조(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) ① ---------- 법 시행령 제14조의5 ----------. 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7조(「안산시 도시공원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공원 등의 위탁료 등) ① (생 략) ② 위탁료는 제16조에 따른 위탁 기간에도 불구하고 매년 새로 결정하며 위탁료의 결정에 관하여는 「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33조 규정을 준용한다.	제17조(공원 등의 위탁료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 「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29조 ----------.

제8조(「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제4조(점용료 징수방법) ①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는 점용 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4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납부할 수 있다.
1. ~ 3. (생 략)
② (생 략)

[별 표]
점 용 료
<table><tr><th colspan="2">점 용 대 상</th><th>점 용 료</th></tr><tr><td colspan="2">1. 도로, 교량,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이와 유사한 시설</td><td>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8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2. 수도관, 하수관, 가스관, 공동구 및 이와 유사한 시설</td><td>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3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3. 경기, 림회, 전시회, 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간기가설 공작물, 공사용 비즘 및 재료 적치장</td><td>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5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4. 기존 시설물의 사용</td><td>사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5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5. 토지의 형질변경, 토석의 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</td><td>채취물건에 대한 산지 근처의 시가에서 채굴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6. 전주, 전신, 변전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</td><td>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10. 다만, 점용부지가 지하인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3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7.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, 관개용수로,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, 비상급수 시설, 방화용 저수조, 지하대피시설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</td><td>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3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8. 초소, 표지판 및 이와 유사한 시설</td><td>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10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9. 지중정착장치(어스앵커)</td><td>「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」 별표1 준용</td></tr><tr><td rowspan="2">10. 태양에너지설비</td><td>태양광설비</td><td>「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」 제14조제6항 준용</td></tr><tr><td>기타</td><td>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</td></tr></table>※ 비 고
1. 점용면적은 점용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한다.
2. 변압기, 개폐기 등과 같이 동일 목적으로 2개 이상 설치할 경우 시설사이에 공간이협소하여 공원 및 녹지의 기능을 하기 어려운 경우 그 공간 면적을 점용면적에 포함하며, 점용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상 핸스를 설치한 경우 안전핸스설치면적을 점용면적에 포함한다.
3. 전기관,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개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할 경우 수직설치시는 수평투영면적이 넓은 관직경을 폭으로 하고, 근접한 관로의 병렬설치시에는 양 관로의 가장자리를 니비로 한다.
4. 태양에너지 설비의 기타라 함은 지열, 태양열 등을 활용한 시설을 말한다.</td><td>제4조(점용료 징수방법) ① ----------
----
---------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4조제8항----------
----------.
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
[별 표]
점 용 료
<table><tr><th colspan="2">점 용 대 상</th><th>점 용 료</th></tr><tr><td colspan="2">1. 도로, 교량,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이와 유사한 시설</td><td>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8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2. 수도관, 하수관, 가스관, 공동구 및 이와 유사한 시설</td><td>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3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3. 경기, 림회, 전시회, 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간기가설 공작물, 공사용 비즘 및 재료 적치장</td><td>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5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4. 기존 시설물의 사용</td><td>사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5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5. 토지의 형질변경, 토석의 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</td><td>채취물건에 대한 산지 근처의 시가에서 채굴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6. 전주, 전신, 변전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</td><td>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10. 다만, 점용부지가 지하인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3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7.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, 관개용수로,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, 비상급수 시설, 방화용 저수조, 지하대피시설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</td><td>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3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8. 초소, 표지판 및 이와 유사한 시설</td><td>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10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9. 지중정착장치(어스앵커)</td><td>「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」 별표1 준용</td></tr><tr><td rowspan="2">10. 태양에너지설비</td><td>태양광설비</td><td>「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」 제12조제6항 준용</td></tr><tr><td>기타</td><td>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</td></tr></table>※ 비 고
1. 점용면적은 점용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한다.
2. 변압기, 개폐기 등과 같이 동일 목적으로 2개 이상 설치할 경우 시설사이에 공간이협소하여 공원 및 녹지의 기능을 하기 어려운 경우 그 공간 면적을 점용면적에 포함하며, 점용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상 핸스를 설치한 경우 안전핸스설치면적을 점용면적에 포함한다.
3. 전기관,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개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할 경우 수직설치시는 수평투영면적이 넓은 관직경을 폭으로 하고, 근접한 관로의 병렬설치시에는 양 관로의 가장자리를 니비로 한다.
4. 태양에너지 설비의 기타라 함은 지열, 태양열 등을 활용한 시설을 말한다.</td></tr>
</table>

제9조(「안산시 공인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」제40조에 따라 안산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, 관수방법,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 조례는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제40조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.

제10조(「안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심의) 학자금 이자지원 조건과 금액, 한도, 선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「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구성된 안산시교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.	제6조(심의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「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」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
제11조(「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의 개정)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[별표]
시청사 · 종합회관 · 보건소 등의 표준 설계면적기준

4. 보건소
(단위 : ㎡)
<table>
<tr><th colspan="2" rowspan="2">구분</th><th rowspan="2">실 명</th><th colspan="2">면 적 기 준</th></tr>
<tr><th>군보건소</th><th>통합시보건소</th></tr>
<tr><td rowspan="16">진료활동</td><td rowspan="16">a</td><td>접수 / 수납</td><td>13.86</td><td>13.86</td></tr>
<tr><td>의무기록창고</td><td>10.89</td><td>10.89</td></tr>
<tr><td>대기공간</td><td>36.00</td><td>48.00</td></tr>
<tr><td>약국조제실</td><td>11.88</td><td>13.86</td></tr>
<tr><td>약국창고</td><td></td><td>13.86</td></tr>
<tr><td>일반진찰실</td><td>35.64</td><td>53.46</td></tr>
<tr><td>처치실</td><td>17.80</td><td>17.80</td></tr>
<tr><td>치과진찰실</td><td>27.54</td><td>27.54</td></tr>
<tr><td>치과장비실</td><td>2.70</td><td>2.70</td></tr>
<tr><td>치과용 암실</td><td>2.16</td><td>2.16</td></tr>
<tr><td>소독실</td><td>8.91</td><td>8.91</td></tr>
<tr><td>예방접종실</td><td>17.82</td><td>17.82</td></tr>
<tr><td>소아놀이실</td><td>9.90</td><td>9.90</td></tr>
<tr><td>수유실</td><td>7.92</td><td>7.92</td></tr>
<tr><td>화장실</td><td>31.68</td><td>31.68</td></tr>
<tr><td>장애자용 화장실</td><td>4.86</td><td>4.86</td></tr>
</table></td><td>[별표]
시청사 · 종합회관 · 보건소 등의 표준 설계면적기준

4. 보건소
(단위 : ㎡)
<table>
<tr><th colspan="2" rowspan="2">구분</th><th rowspan="2">실 명</th><th colspan="2">면 적 기 준</th></tr>
<tr><th>군보건소</th><th>통합시보건소</th></tr>
<tr><td rowspan="16">진료활동</td><td rowspan="16">a</td><td>접수 / 수납</td><td>13.86</td><td>13.86</td></tr>
<tr><td>의무기록창고</td><td>10.89</td><td>10.89</td></tr>
<tr><td>대기공간</td><td>36.00</td><td>48.00</td></tr>
<tr><td>약국조제실</td><td>11.88</td><td>13.86</td></tr>
<tr><td>약국창고</td><td></td><td>13.86</td></tr>
<tr><td>일반진찰실</td><td>35.64</td><td>53.46</td></tr>
<tr><td>처치실</td><td>17.80</td><td>17.80</td></tr>
<tr><td>치과진찰실</td><td>27.54</td><td>27.54</td></tr>
<tr><td>치과장비실</td><td>2.70</td><td>2.70</td></tr>
<tr><td>치과용 암실</td><td>2.16</td><td>2.16</td></tr>
<tr><td>소독실</td><td>8.91</td><td>8.91</td></tr>
<tr><td>예방접종실</td><td>17.82</td><td>17.82</td></tr>
<tr><td>소아놀이실</td><td>9.90</td><td>9.90</td></tr>
<tr><td>수유실</td><td>7.92</td><td>7.92</td></tr>
<tr><td>화장실</td><td>31.68</td><td>31.68</td></tr>
<tr><td>장애인용 화장실</td><td>4.86</td><td>4.86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/table>

제12조(「안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(생 략) 2. “친환경농산물”이란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을 말한다. 3. “우수 농·축·수산물”이란	제2조(정의) ---------- -----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-----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----------. 3. ----------

현 행	개 정 안
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·축·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의 경로가 투명하여 이력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	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가.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	가.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에 따른 품질인증 농수산물
나. (생 략)	나. (현행과 같음)
다.「수산물품질관리법」에 따른 품질인증품	<삭 제>
라. (생 략)	라. (현행과 같음)
마.「경기도 농특산물통합상표 관리 조례」에 따른 경기도지사인증 농특산물	마.「경기도 우수식품 인증 관리 조례」에 따른 경기도지사 인증 우수식품
바. (생 략)	바. (현행과 같음)